

#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승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16.

발의자 : 양승조 · 정춘숙 · 김정우

신창현 · 인재근 · 안호영

전혜숙 · 이용주 · 김해영

이학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정신보건법」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정신보건법」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호다목 본문).

법률 제 호
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다목 본문 중 “「정신보건법」”을 “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허가의 제한)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 위영업의 허가(이하 “영업허가” 라 한다)를 할 수 없다.  1. (생 략)  2.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 가. · 나. (생 략)  다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정신과전문의가 영업 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6조(허가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라. ~ 아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